

심사보고서

「충북도립대학」 교명 변경 동의안

「충북도립대학」 교명 변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7
----------	----

2018. 09. 19.(수)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8년 08월 28일

다. 회부일자 : 2018년 08월 31일

라. 상정일자 : 2018년 09월 07일

-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평중 교학처장)

가. 제안사유

- 고등교육법 개정(2011.7월)에 따라 전문대학도 대학 또는 대학교라는 명칭 사용 가능하게 되었음
- 전남도립대학을 시작으로 최근 강원도립대학까지 4개 도립대학이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학교로 교명변경을 추진하였음
- 공립대학의 교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하여 정하게 되어 있으며, 교육부의 최종 인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음
- 이에, 우리대학은 교명 변경에 대한 교육부 인가 신청 전에 충청북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현재 교명인 충북도립대학을 충북도립대학교로 변경하여 학교의 위상과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
- 교육부의 교명변경 인가 후 변경된 교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관련 조례 및 학칙 개정 추진

3. 검토보고 요지 (최영지 수석전문위원)

○ 법적 근거 및 동의안의 내용

- 학교명칭 변경은 「고등교육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에게 변경 신청하여 인가를 받은 후 관련조례를 개정해야 함
- 「고등교육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공립대학도 ‘대학 또는 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 충북도립대학이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시 의회 부결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고려할 때 학교명칭 변경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절차는 적절하다고 사료됨

○ 종합의견

- ‘충북도립대학’ 명칭은 2008년 11월 1일 충북과학대학에서 변경하여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음
- 「고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변경(2011. 7. 21.)에 따라 대학 또는 대학교 명칭사용
- 전국7개 도립대학 중 2015 충남도립대학교가, 2016년에는 강원도립대학교가 대학에서 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는 등 4개 학교가 교명을 변경 하였으며 다른 도립대학에서도 교명 변경이 예상되고 있음
- 이에 충북도립대학에서는 그동안 직원, 학과, 총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학평의원회 및 교무위원회의 찬성의결을 받아 교명변경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 변화하는 교육환경을 반영하여 교명에 따른 학교 간 차별성을 극복하고 대학의 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교명변경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 다만, 교명변경이 재학생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장기적인 학교발전에 기여할 것으로는 예상되지만, 교명변경 자체만으로는 학교 위상과 이미지 제고에 한계가 있는 만큼 학교 운영의 내실화와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는 전공과목 개설 및 우수한 교수진의 확보 등 대학발전 전략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수립 시행하여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1 전국도립대학교 현황

□ 전국도립대학 기본현황 (2018년 기준)

구분	학 교 명	설립연도	학과수	편제정원	교수인원	비고
1	강 원 도 립 대 학 교	1998	11	975	30	
2	경 남 도 립 거 창 대 학	1996	12	960	29	
3	경 남 도 립 남 해 대 학	1996	8	800	23	
4	경 북 도 립 대 학 교	1997	13	910	30	
5	전 남 도 립 대 학 교	1998	18	1,530	45	
6	충 남 도 립 대 학 교	1997	12	1,104	32	
7	충 북 도 립 대 학	1997	11	1,000	30	

□ 전국 도립대학 교명변경 추진 현황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일
강원도립대학	강원도립대학교	2016. 4. 1.
충남도립청양대학	충남도립대학교	2015. 1. 1.
경북도립대학	경북도립대학교	2013. 1. 1.
전남도립대학	전남도립대학교	2012. 1. 1.
남해전문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2008. 7. 1.
거창전문대학	경남도립거창대학	2008. 7. 1.

□ 고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

-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②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학교의 명칭)

- ① 학교의 명칭은 국립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명칭을 정할 때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대학 또는 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학교설립 등)

- ①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학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인가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학교헌장 6. 향후 4년간 재정운영계획서 7. 실험실습설비 등 내부시설 8. 교사의 평면도 9. 개교예정일 10. 부설학교를 두는 때에는 그 계획서 11.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 ⑤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학교의 설립·경영자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0호의 사항을 말한다.**
- ⑥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1. 변경사유 2. 변경내용 3. 변경연월일
- ⑦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학교의 폐지: 60일
 - 2. 학교의 위치 변경: 60일
 - 3. 학교의 설립·경영자 변경: 30일
 - 4. 학교의 설립목적, 명칭 또는 부설학교의 설립계획서 변경: 30일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 ‘충북도립대학’ 교명 변경 동의안」

「충북도립대학」 교명 변경 동의안

의안 번호	17
----------	----

제출연월일 : 2018년 8월 28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고등교육법 개정(2011.7월)에 따라 전문대학도 대학 또는 대학교라는 명칭 사용 가능하게 되었음
- 전남도립대학을 시작으로 최근 강원도립대학까지 4개 도립대학이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학교로 교명변경을 추진하였음
- 공립대학의 교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하여 정하게 되어 있으며, 교육부의 최종 인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음
- 이에, 우리대학은 교명 변경에 대한 교육부 인가 신청 전에 충청북도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현재 교명인 충북도립대학을 충북도립대학교로 변경하여 학교의 위상과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
- 교육부의 교명변경 인가 후 변경된 교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관련 조례 및 학칙 개정 추진

3. 의안전문 : 붙임

4. 관계법령 발취 : 붙임

5. 비용추계서 : 붙임

충북도립대학 교명 변경 동의안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북도립대학의 교명변경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1. 목 적

- 고등교육법 개정(2011.7월)에 따라 전문대학도 대학 또는 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짐
- 전남도립대학을 시작으로 최근 강원도립대학까지 전국도립대학 중 4개 도립대학이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학교로 교명변경 추진

<전국 도립대학 교명변경 추진 현황>

변경전	변경후	변경일
강원도립대학	강원도립대학교	2016. 4. 1.
충남도립청양대학	충남도립대학교	2015. 1. 1.
경북도립대학	경북도립대학교	2013. 1. 1.
전남도립대학	전남도립대학교	2012. 1. 1.
남해전문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2008. 7. 1.
거창전문대학	경남도립거창대학	2008. 7. 1.

- 이에, 전국 도립대학의 최근 추세에 맞추어 교명 변경을 추진하여 충북유일의 도립대학으로서 위상과 이미지 쇄신 필요

2. 교명의 변경

- 현재의 교명 : 충북도립대학
- 변경할 교명 : 충북도립대학교

3. 교명의 사용

- 교육부의 교명변경 인가 후 사용
- 관련 조례 및 학칙 개정 시행

관계법령 발취

□ 고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21.]

* 교명 변경 사항이 포함됨

제18조(학교의 명칭) ① 학교의 명칭은 국립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칭을 정할 때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대학 또는 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1.]

충북도립대학 교명변경 동의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가 설립·운영하는 도립대학의 인지도 및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명을 변경하고자 함
- 교명변경 : (현재) 충북도립대학 (변경)충북도립대학교

2. 비용 발생 요인

- 교명변경에 따른 공인신조, 사업자 등록변경, 교기제작 및 외부 시설 및 학내 표지판 등 변경 필요

3. 관련조문 : 해당없음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공인신조, 사업자 등록 변경, 교기제작 및 외부시설 및 학내 표지판 변경에 필요한 금액

나. 추계 결과

- 공인신조, 사업자 등록변경, 교기제작 : 2,550천원
- 외부시설 및 학내 표지판 변경 : 110,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충북도립대학 교학처장 김 평 중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세 출	112,550	-	-	-	-	112,550
공인신조,	1,100	-	-	-	-	1,100
사업자등록 변경	450	-	-	-	-	450
교기제작	1,000	-	-	-	-	1,000
외부시설정비	27,000	-	-	-	-	27,000
학내 표지판 및 홍보판	83,000	-	-	-	-	83,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112,550				112,55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구·군비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세부 산출기초]

구 분	금액 (천원)	산출근거
합 계	112,550	
공인신조	1,100	22개 × 50,000 (사무국 14개, 산학협력단 8개)
사업자 등록 등기 변경	450	3건 × 150천원(대학, 산학협력단, 발전재단)
교기제작	1,000	5개× 200천원
외부시설정비 (도로표지판)	27,000	대학 안내표지판 지주형 대형 8개×1,000천원 대학 안내표지판 입형 대형 1개×3,000천원 대학 안내표지판 입형 소형 7개×1,000천원 대학 안내표지판 지주형 1개×2,000천원 대학 안내표지석 1개×13,000천원
학내 표지판 및 홍보관	83,000	본관 내 현황판 15개×300천원 대학 홍보관(조명식아치) 1개×10,000천원 대학 표찰 및 대학 안내 250개×30천원 대학 흡연실 홍보관 3개 ×500천원 현황판 5개 × 500천원 미래관 외벽 간판 1개×10,000천원 대학안내표지판(조명형) 4개×12,500천원